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. 10. 21 선고 2019가단11434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부산지방법원 2021. 6. 25 선고 2020나62884 판결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. 10. 21 선고 2019가단11434 판결

전문

원 고 1. A

2. B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윈

담당변호사 김민중

피 고 1. C

2. D

변론종결 2020. 9. 16.

판결선고 2020. 10. 21.

주문

1.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35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망 E(이하 ‘망인’이라 한다)은 2017. 12. 15.경 사망하였는데, 원고 A은 망인의 장남 F의 아들이고,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다. 피고 C은 망인의 삼남이고, 피고 D은 피고 C의 처이다.

나. 망인은 2007년경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정리한 후 피고들과 합가하여 이후 사망시까지 10여 년간 피고들과 함께 거주하였다. 망인은 위 합가 이전에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35,000,000원(이하 ‘이 사건 임대차보증금’이라 한다)을 반환받아 2007. 10.경 피고 C에게 교부하였다.

[인정근거: 다툼 없는 사실, 변론 전체의 취지]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들의 주장 취지

주위적으로, 망인은 생전에 수차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, 원고들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증여계약이 성립하였음에도, 피고들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일방적으로 취득함으로써 원고들이 이를 수령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으므로,

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예비적으로,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함을 잘 알면서 그 지급을 거부하고 있고, 이는 횡령에 해당하므로,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(1) 원고의 주위적, 예비적 청구는 원고들과 망인 사이에 증여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,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과 망인 사이의 증여계약 성립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(2)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망인이 구두로 원고들에게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, 원고들의 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.

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, 피고 C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취득한 것은 망인이 이를 증여하였기 때문으로,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. 원고들의 주장 취지를 이중매매와 유사한 이중증여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이해한다 하더라도,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언제든지 이를 해제할 수 있으므로(민법 제555조),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였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피고 C에게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. 또한 망인의 행위가 설령 위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, 이중의 계약이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 C이 망인의 배신행위를 유인,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고, 그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이중증여에 이른 경위, 약정된 대가 등 계약 내용의 상당성 또는 특수성 및 망인과 피고 C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바, 갑 제1 내지 10호증,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, 즉 망인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증여하게 된 시점은 망인과 피고들이 합가하던 시점으로, 피고들이 망인을 모시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증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, 피고들은 실제로 10여 년간 망인을 부양하였고, 이에 망인의 다른 자녀들 또한 피고 C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취득하는 데에 동의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, 피고 C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

임대차보증금을 증여받은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이중계약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.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,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보관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, 위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증여한 것이지, 그 보관을 위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. 설령 피고 C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보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탁자는 원고들이 아닌 망인이고,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망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상속인들이 피고 C에게 위 돈을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를 이룬 것으로 보이므로, 어느 모로 보나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.

(3) 또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취득한 바 없는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.

3. 결론

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남세진